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민형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633 발의연월일: 2024. 10. 10.

발 의 자 : 민형배 • 이기헌 • 황운하

주철현 • 윤준병 • 서미화

장경태 • 박민규 • 김용민

이정헌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코로나 사태 이후 폭등한 대중형 골프장 코스 이용료(그린피)를 합 리적인 수준으로 낮추고자 합니다.

대중형 골프장은 세제혜택을 받는 대신 중과세율을 부과하는 회원 제 골프장보다 낮은 이용료를 받아야 합니다. 현행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 따르면, 대중형 골프장은 4·5·6월과 9·10·11월의 '평균 이용료'가 정부가 제시한 상한 이용료1)를 넘지 않아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.

대중형 골프장 다수가 이용 수요가 많은 시간대에 이용료를 높게 책정하고 수요가 적은 새벽이나 야간에 이용료를 싸게 책정해 평균치 를 맞추는 꼼수를 씁니다.

세제혜택은 받으면서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이용료보다 비싸게 받는 것은 대중형 골프장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.

¹⁾ 주중 18만 8천원, 주말 24만 7천원

이에 대중형 골프장 '연중 최고 이용료'가 정부가 제시한 상한 이용 료를 넘지 않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. 대중형 골프장이 세금감면분만 큼 이용료를 인하해 골프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골프 대중화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(안 제21조제5항 신설). 법률 제 호

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1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대중형 골프장을 운영하는 자는 이용료의 최고액을 제10조의2제 2항에 따른 대중형 골프장 지정을 위한 이용료 요건 이하로 책정하 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즉시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1조(체육시설의 이용 질서) ①	제21조(체육시설의 이용 질서) ①
~ ④ (생 략)	~ ④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⑤ 대중형 골프장을 운영하는
	<u>자는 이용료의 최고액을 제10</u>
	조의2제2항에 따른 대중형 골
	프장 지정을 위한 이용료 요건
	이하로 책정하여야 한다.